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|
| 합 계 | 300,203,774 | 9,006,113 |
| 일반회계 | 223,261,803 | 6,697,854 |
| 특별회계 | 76,941,971 | 2,308,259 |
| 공기업특별회계 | 7,251,053 | 217,532 |
| 의령친환경골프장지방직영기업공기업특별회계 | 7,251,053 | 217,532 |
| 기타특별회계 | 69,690,918 | 2,090,728 |
| 상수도사업특별회계 | 10,453,759 | 313,613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594,988 | 17,850 |
| 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916,561 | 27,497 |
| 농업인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| 28,270,472 | 848,114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| 10,981,207 | 329,436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| 4,776,742 | 143,302 |
|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| 2,150,508 | 64,515 |
|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| 11,042,423 | 331,273 |
|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| 384,237 | 11,527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120,021 | 3,601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"생 략"

제 4 조 "생 략"

제 5 조 "생 략"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,851,727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5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